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부과요건 및 산정기준 변경 〉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60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부과요건 및 산정기준 변경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민회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4.

다. 회부연월일 : 2024. 9.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등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분담금 부과 제도가 방송광고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협찬 매출액을 늘리고 방송광고 매출액을 줄이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밖에 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광고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

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Ⅲ. 검토의견

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부과요건 및 산정기준 변경

가. 개정안 요지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광고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5조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생략)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	② ----- ----- ----- ----- -----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 (「방송법」 제2조제22호1)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로서

현행	개정안
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을 더한 금액----- -----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 ----- ----- -----.
	1.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2.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매출액

현행	개정안
<신설> ④ ~ ⑨ (생략)	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④ ~ ⑨ (현행과 같음)

다. 검토 의견

-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²⁾,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현행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³⁾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

1)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사업자 및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
위에서 징수율을 정하여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고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행법 제25조제3항에 근거하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징수율을 정하여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음⁵⁾.

- 개정안은 이러한 분담금의 부과요건 및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뿐 아니라 방
송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징수율을
정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여러 개의 방송채
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
용사업자로부터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
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
수할 수 있다.

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현행 및 개정안>

구분	주체	부과요건	산정기준	개정안
제25조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 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u>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범위</u>	▶징수기준 변경 <u>방송광고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의 100분의 6범위</u>
제25조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u>종합유선방송사업자</u> • <u>위성방송사업자</u> • <u>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u>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6 범위	▶징수대상 추가 <u>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u>
제25조 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 범위	-

○ 현행 분담금 부과 제도가 방송광고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협찬 매출액을 늘리고 방송광고 매출액을 줄이려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바, 방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

여 사회적 책무를 일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한편 방송통신의 진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중검토 의견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5조제2항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담금 산정기준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방송협찬 매출액’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⁶⁾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⁷⁾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지상파·종편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협찬 매출액’ 일부를 부담금으로 확대하는 것은 동 사업자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그 밖에 방송협회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도 협찬 매출액의 성격은 방송사의 수입이 아닌 제작 요소의 투입으로 봐야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⁸⁾

6) 협찬에는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작비 외에도 의상, 물품, 장소 등 간접적 경비를 포함되고 있어 협찬 매출액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입장

7)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8) [참고자료]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참조

○ 안 제25조제3항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배타적 권리를 얻은 허가·승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는 등록사업자로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규제 또는 사업권 부여로 인한 특별한 이익이 제한적이라는 법적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시장 진입장벽이 낮고 법인 분리 등이 쉬운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부과할 경우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⁹⁾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또한 방송서비스매출액 3천억원 이상 사업자는 2023년 회계기준 1곳으로, 매출액 기준(3천억원)의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의견임.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및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등록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그중 특정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산업 발전 저해 및 평등의 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임.
- 다만, 방송협회와 일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은 현재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방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에게도 기금 납부 의무를 부과해 사회적 책무를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개정안 제25조제3항에는 공감하며 개정

9) 분담금 부과기준(매출액 3,000억원)을 회피하기 위한 법인(채널) 분리 가능성 존재

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임.

- 한편, 개정안 제25조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현재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승인사업자¹⁰⁾와의 구별을 위하여 「방송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¹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종합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송협찬 매출액을 분담금 산정기준에 포함하여 방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공적책임을 분담하게 하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와 함께, 사업자의 부담으로 인한 방송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 및 규제의 형평성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가 신중검토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236

10)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과기정통부 승인,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통위 승인

11) 「방송법」 개정(공포 '24.10.22, 시행 '25.4.23.)으로 향후 라디오, 데이터, 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이 아닌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

[참고자료]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이해관계자	개정안에 대한 의견
TV조선 (종편)	○ (안 제25조제2항)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에 대한 개선없이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산정기준을 협찬매출액까지 확대하는 것은 방송산업의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규제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JTBC (종편)	○ (안 제25조제2항)징수율 하향 조정없이 산정기준만 확대될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협찬매출은 방송사의 수입이라기보다는 ‘제작요소 투입’의 개념이므로 분담금 부과대상으로 부적절하며 방송광고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콘텐츠 제작 위축으로 이어질수 있음 ○ (안 제25조제3항)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방송사업자 중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에게도 기금 납부 의무를 부과해 사회적 책무를 일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는 한편 방송통신의 진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개정안에 찬성함
채널A (종편)	○ (안 제25조제2항)협찬매출과 방송매출은 성격이 다르며, 협찬매출액을 포함한 분담금 부과는 방송사 제작 및 경영을 위축시킬수 있음
MBN (종편)	○ (안 제25조제2항)방송광고 매출액 감소는 OTT 등이 방송광고 시장을 잠식하며 발생하는 현상으로, 미디어 생태계에서 방송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음. 협찬매출액까지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산정할 경우, 방송 콘텐츠 제작 등 관련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큼
연합뉴스TV (보도)	○ (안 제25조제2항)현재 경기 침체, 기업의 실적 부진, 광고 축소 등으로 인해 방송사들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과도한 분담금으로 인해 방송제작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고 콘텐츠 투자액 감소, 제작인력 축소 등으로 방송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방송협회	○ (안 제25조제2항)협찬과 방송광고는 성격이 다르며, 협찬에 대한 기금 부과는 방송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안 제25조제3항)공적 책무 수행 없이 시장에서의 이익만 누리고 있는 대기업 MPP사업자에 대해 기금을 분담하도록 하는 개정안 조항은 타당한 입법임.

한국방송채널 진흥협회	○ (안 제25조제3항)'등록' 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그중 특정 기업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은 산업 발전 저해 및 평등의 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 다분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 (안 제25조제3항)'등록' 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그중 특정 기업만을 대상으로 법을 신설하는 것은 법규제에 대 한 일률성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 다분